

2019년도 제10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제10회 계약심의위원회 개회에 앞서 지난번 제9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감사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간사(구매팀장)	<p><<전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p> <p>제9회 계약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8명 중 6명의 참석으로 「제주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 용역」 변경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내용은 당초에 2억3천만원 정도로 시작했던 제주공동물류센터 위탁운영 용역 계약금액이 1차 변경 시 3억6천만원 정도로 증액됐고,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총 5억여원으로 계약비용이 증가됨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의 계약체결 건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약 취지나 시기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계약변경 원안의결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진행상황은 예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아직 변경계약은 체결이 안됐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p>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차 심의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심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없으시면 2019년도 제10회 계약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께서 성원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팀장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 재적위원 8명 중 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PET Chip, HDPE Chip 등 5종의 원부자재에 대한 계약방법 등 심의사항입니다. 제안부서도 한 개 부서이고, 원부자재라는 공통점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5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 후에 의견을 각 각 심의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발언자	발언내용
심 의 위 원	네
위 원 장	그러면 제2019-12호 『제주삼다수 PET CHIP 단가구매』의 건, 13호 『제주삼다수 HDPE CHIP 단가 제조·구매』의 건, 14호 『제주삼다수 및 휘오제주 수축필름 단가 제조·구매』의 건, 15호 『제주삼다수 및 휘오제주 롤상표 단가 제조·구매』의 건, 16호 『제주삼다수 스트레치후드필름 단가 제조·구매』의 건, 총 다섯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제안부서에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비 자 재 팀 장	<p style="text-align: center;"> << 제2019-12호 부의안건 설명 >> << 제2019-13호 부의안건 설명 >> << 제2019-14호 부의안건 설명 >> << 제2019-15호 부의안건 설명 >> << 제2019-16호 부의안건 설명 >> </p>
위 원 장	효율적 운영을 위해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의 총 사업비가 5백억원 이상입니다. 내년 제주삼다수 생산을 위한 주요 원부자재 계약을 망라한 내용입니다. 들으신 바에 따라서 질문, 지적,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비 자 재 팀 장	보고 게시는 것은 PET Chip 원료입니다. 2가지 석유화학제품을 섞어서 PET Chip을 만들게 됩니다. 이 2가지 원료가 세계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HDPE라는 병뚜껑을 만드는 소재입니다. 제조사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원부자재는 롤상표입니다. PET 병에 감겨지면서 커팅되는 상표입니다. 길이에 따라 435mm와 835mm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축필름은 팩단위 포장을 하는 원부자재입니다. 보고 게시는 수축필름은 2L 제주삼다수를 팩단위로 포장하거나 절단기가 포함된 설비에서 0.5L 제주삼다수 팩단위 포장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스트레치후드필름은 팔레트 포장 시 잡아당겨서 늘려서 커팅하고 밴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수축필름 하고 스트레치후드필름은 기본 원료가 다른가요?
제안부서담당자	네, 스트레치후드필름은 약간 질긴 원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LLDPE 원료가 사용되고, 수축필름은 LDPE라고해서 약간 딱딱한 재질의 원료를 사용합니다.
설비자재팀장	스트레치후드필름 같은 경우 당겨서 제품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탄성이 있어야합니다. 서로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위 원 장	<p>팔레트 한 개에 적재되는 물량이 대략 1톤 정도 됩니다. 그 물량을 잡아주는 힘이 필요해서 스트레치후드필름에 탄성이 필요합니다.</p> <p>PET Chip의 경우에 석유화학제품이기는 하지만 꼭 석유가격과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시장하고 연동이 됩니다. 중국시장에서 많이 쓰면 올라가고, 적게 쓰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PET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일전에 우리가 중국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다가 막히다 보니 신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석유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연동은 되지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p> <p>자료를 보시면 PET Chip이라든지 HDPE의 경우에는 입찰가능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이 3개 업체 중 국내생산 업체는 2곳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업체가 있었는데 정리 및 통합이 되어서 ■■하고 ◆◆◆◆◆이 있습니다. ◆◆◆◆◆은 무역업체인데 중국제품을 수입해서 납품하겠다고 해서 현재 사전품질검사는 합격한 상태입니다.</p> <p>롤상표나 수축필름 분야에는 국내에서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많습니다. 다만 우리공사의 경우 장기적인 거래를 못하고 연도별 입찰을 하다 보니 업체에서 설비를 쉽게 들여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 요청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설비 신규투자를 해야 하는데 올해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엔 낙찰이 안 되면 엄청난 설비투자에 대한 압박이 생겨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 못하는 상황입니다.</p>
◎ ◎ ◎ 위 원	그래서 복수낙찰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 원 장	예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최근에 경제신문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국내에 활성화 되어있나요?
위 원 장	국내에는 플레이크 타입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원사를 뽑거나 인형 충전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PET를 플레이트 타입이 아닌 저희가 사용하는 형태의 Chip으로 만들 수 있으면 거의 PET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PET Chip 새제품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재활용 Chip을 생산하는 회사가 없어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 비 자 재 팀 장	국내 현행 식품관련 법에 따르면 재활용 PET로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포장재는 못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PET는 원사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이 계란 포장재, 과자 플라스틱 용기처럼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외국에서는 50%까지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고는 하는데 국내에서는 관련법령이나 생산설비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공사 설립 25주년이 되는데 내년 근무복 제작 시 재활용 플라스틱에서 원사를 뽑아서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 ◎ ◎ 위 원	사전에 품질검사를 다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설 비 자 재 팀 장	네. 우리공사 내부에서 규격을 공개 공고하고 사전품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저희가 사전품질검사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접수를 받고 설비에 원부자재를 적용해봅니다. 원부자재 규격이 맞다고 해도 저희 설비에 안맞을 수 있어서, 설비에 적용해봐서 합격하면 2년 정도 입찰참가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 ◎ 위 원	그 사전품질검사도 공고를 내서 시험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설 비 자 재 팀 장	네.
◎ ◎ ◎ 위 원	월 변동단가 산정방법이 품목마다 상이한데 적용방식이 규정된 게 아니라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그 당시 공고상에 적절히 변동하거나 만들어서 항상 하십니까?

발언자	발언내용
설비자재팀장	네, 맞습니다. 공고마다 계약특수조건에 계산식 등을 기재해서 공고합니다.
○○○위원	변동폭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변동폭 제한규정을 넣거든요. ‘몇 % 이상 되어야 반영한다’라든지요.
설비자재팀장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2%나 3%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기름값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주마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방식을 미리 공지하려는 겁니다.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국제공통으로 사용하는 물가정보지에 따라서 변동폭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아무리 작아도 반영해준다는 건가요?
설비자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변동폭을 오를 때도 50%만 인정해주고, 내릴 때도 50%만 인정하는 방법도 있어서 업체들과 의견을 조율해보니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올해 적용을 안 한 이유는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전반적 추세가 하락세로 보여서 만약에 변동폭을 50%만 적용하게 되면 저희회사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물가가 오른다는 가정 하에 있으면 그 방법을 적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롤상표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을 적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설비자재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	복수낙찰제와 관련해서 복수낙찰자 수는 언제 결정됩니까?
설비자재팀장	입찰에 부치면 최소 2개 업체는 들어와야 입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수낙찰제를 하게 되면 최소 입찰참가업체가 3개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사전품질검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사전품질검사를 거친 업체가 3개 이상이 되어야 기본 입찰성립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구 매 팀 장	사전품질검사를 거친 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하고 그 후에 복수낙찰제 적용 여부를 적용합니다.
◎ ◎ ◎ 위 원	그 수가 자료에 없어서 혹시 나중에 정하나 싶어서 여쭙봤습니다.
● ● ● 위 원	공급비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설 비 자 재 팀 장	네 7:3 정도입니다.
◎ ◎ ◎ 위 원	이게 국가계약법에 희망수량낙찰제와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설 비 자 재 팀 장	네 맞습니다.
◎ ◎ ◎ 위 원	그렇게 되면 업체 생산물량이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도 희망수량낙찰제처럼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을 제시를 하나요, 아니면 가격만 가지고 하나요?
구 매 팀 장	저희가 계약특수조건에 1순위가 70%라고 명시해놓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위 원	네, 여기서 조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설 비 자 재 팀 장	네, 범위가 있습니다. 최상이 70%이고 최하가 50%로 해서 물량을 선정할 수 있고, 결국은 최저가 1순위자가 희망한 물량이 50%이면 그 1순위는 50%가 되는 겁니다.
◎ ◎ ◎ 위 원	생산능력만 된다면 7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설 비 자 재 팀 장	최대가 70%입니다. 그 이상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 ◆ ◆ 위 원	우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해두겠다는 것 같습니다.
구 매 팀 장	업체에 가보면, 업체에서는 사실 저희의 요구수량이 부담스러운 물량입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설비자재팀장	<p>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은 하지만 한군데만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을이 되어버립니다. 업체에서 만약에 납품을 안 해버리면 저희는 공장을 멈춰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체가 워낙 크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거든요. 만약에 한번에 나갔을 때 불량이 나게 되면 업체도 힘들지만 새로 다시 제작해서 받는 기간 동안 저희도 생산에 지장이 있어서 복수낙찰제로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p>
위원장	<p>필름 같은 경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같은 업체에서 같은 원료를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을 해오더라도 우리 설비에 걸어보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개 업체와만 계약을 하면 거기서 바로잡기 전에는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복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런 상황에 대응을 하는 체계를 만들면서 조달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최대한 자문을 얻었습니다.</p>
감사실장	<p>입찰은 이제 바로 하실 것 같고, 계약체결예정 시기는 언제인가요?</p>
구매팀장	<p>저희가 12월 말에 계약을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맞춰서 계약을 하는데 자료에 계약체결일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계약체결일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원부자재 업체들을 만나보면 한 2년간 장기계속계약을 요청하는 업체가 많은데 계약법 상에 항목이 안되서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1년씩 하고 있어서 업체들에 그런 부담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p>
◆ ◆ ◆ 위원	<p>장기계속계약은 대상이 정해져 있죠.</p>
구매팀장	<p>네, 원부자재는 대상이 아니어서요. 업체들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2년씩 계약을 해주면 업체가 설비투자도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1년으로 끝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성과공유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 매 팀 장	성과공유제도 기술개발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해서 무한정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 ◆ 위 원	서비스수준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기관 적용 규정을 봤던 것 같은데요. 단년도 계약 보다는 장기계약 해주는 게 우리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투자하고 그러는 게 제품을 쓰는데 리스크가 계속 바뀌는 것 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요.
위 원 장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3년 정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죠.
설 비 자 재 팀 장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업체가 한번 계약이 안 되고 3년 정도 가버리면 우리공사만 쳐다보는 회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위 원 장	저희 PET병이 1년에 한 9억병 정도가 들 겁니다. 라벨이 9억매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소비하는 공장이 없거든요.
■ ■ ■ 위 원	신규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회계연도와 존속기간을 동일하게 해서 1년 단위의 계약이 매년 다시 반복되서 체결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종전에 반복 체결되어진 계약의 방법과 이번 부의안 안건의 내용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점이 없고 개선사항 같은 것이 없다고 하면 심의안 자체에 대한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제안설명 할 때 이야기 했지만 변동단가 적용방법에 대해 조금 달리 했다고 했는데요.
설 비 자 재 팀 장	수축필름의 경우에는 조정금액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장가격에 대한 변동율을 다 인정해줬었는데, 저희가 보는 시장상황은 원료에 대한 것인데, 수축필름을 생산하는데 원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원료에 대한 그 부분만 인정해주고자 합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설비자재팀장	그 재료비에 대해서만 별도로 롤당 이정도 들어간다는 가정 하에 관해서 규격서를 참고해서 롤당 원료가 75%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만 변동폭을 인정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52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찰 당시 재료비 관련된 사항이죠?
설비자재팀장	네.
◆ ◆ ◆ 위원	원가계산이 정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설비자재팀장	국제가격이라는 것이 주원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필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른 원료들에까지 다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 검토하기 전에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재 사전품질테스트를 통과한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에 대한 + α 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 ● 위원	12, 13호를 보시면 실제로 국내운임 조건은 상차도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 받으신 내역에는 어떤 것은 상차도 조건, 어떤 것은 도착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호와 13호의 경우에는 상차도 조건으로 구매예정 내역을 써놓고, '도착도 조건은 우리공사 별도 운송비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공사의 별도 운송비 검토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검토조건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16호 안건을 보면 도착도 기준으로 구매예정내역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통일해서 납품 조건을 상차도면 상차도, 도착도면 도착도로 해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 특수조건과 관련해서 약간 손을 봤으면 하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12호와 14호 안건의 계약특수조건 제14조에 계약의 해제·해지 부분이 있는데, 13호 안건의 특수조건 14조에서는 '붙임2. 조치사항 세부내역과 같다'라고해서 오히려 이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12호 안건에서는 왜 '조치통보방식은 아래와 같다'고 본문에 이 부분을 바로 넣으셨는지 두건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발언자	발언내용
설비자재팀장	아닙니다.
● ● ● 위원	아니면 붙이시면서 바뀌게 된 거죠?
설비자재팀장	네
● ● ● 위원	그러면 하나로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 15, 16호 안건에도 다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같이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비자재팀장	아까 말씀하신 상차차 부분에서 원부자재 업체 위치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조건을 상차도 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참고사항에 보시면 우리공사 물류비용이 삼다수를 내륙으로 운송하는 차가 내려올 때 빈차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물류비가 상당히 싸입니다. 그래서 업체 견적과 비교해보면 물류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테니 공격적인 투찰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상차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 ◆ 위원	상차도, 하차도 견적을 다 같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업체에 상차도, 하차도 두 가지 조건으로 견적을 다 받아서 비교한 것 같습니다.
설비자재팀장	네
● ● ● 위원	별도 운송비 검토라고 표현을 보면 금액이 나중에 확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 위원	사실 저희 운송은 삼다수 물류운영사업 운송계약에 원부자재 조달물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위원	아, 네. 원부자재를 상차도 조건으로 하고 별도 우리공사 운송비에서 물류비는 나간다는 거군요. 16호의 경우 도착도 기준으로 하면 도내에 있는 업체라서 도착도기준으로 한건가요?
설비자재팀	네, 그렇습니다.
● ● ● 위원	이제 이해됩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p>● ● ● 위 원</p> <p>제안부서담당자</p>	<p>주요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약특수조건 제14조하고 계속 연결되어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안건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제14조 계약 해지·해제 조항만 보이는데, 의안 제14호의 경우에만 별도로 맨 위에 제17조로 계약해지조항을 넣으셨더라고요. 제14호 안건부터 물품복수낙찰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제14호 안건 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한 해지에 관한 복수조항을 하나 넣으셨더라고요. 복수낙찰제를 적용하는 15호, 16호 안건에도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p> <p>네 그렇습니다.</p>
<p>● ● ● 위 원</p> <p>제안부서담당자</p>	<p>고치시는 김에 그러면 17조에 보면 ‘계약담당’이라고 하셨는데 ‘계약담당자’라고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사담당’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서요. 17조 1항에 ‘공사담당’이 누구신거죠?</p> <p>용어 정리하겠습니다.</p>
<p>● ● ● 위 원</p> <p>설비자재팀장</p>	<p>다른 안건은 부의안 제목이 ‘단가 제조·구매’로 되어있는데요, 12호 안건만 ‘단가구매’로 되어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2호 건은 제조는 안하고 구매만 하는 건가요?</p> <p>이 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제조를 안 합니다.</p>
<p>위 원 장</p>	<p>사전품질테스트는 통과했는데 제조업체가 아닌 무역업체입니다.</p>
<p>◎ ◎ ◎ 위 원</p>	<p>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공사는’으로 시작해서 ‘공사담당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담당자 개인을 지명할 게 아니라 ‘공사는’으로 바꾸셔야할 것 같습니다. 2조에 ‘계약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주체들이 공사와 계약상대자이기 때문에 계약담당자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p>
<p>● ● ● 위 원</p>	<p>용어의 정의와 통일하셔야할 것 같아요. 2조에 보면 우리공사는 ‘계약자’라고 표현이 되어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용어만 다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p>■ ■ ■ 위 원</p>	<p>일단은 계약당사자는 공사와 상대방입니다. 여기서 계약담당자는 이른바 공사의 이용보조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행보조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우리공사’라고 하고, 저쪽은 ‘계약상대자’라는 표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용어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이라고 쓰는데요.</p> <p>사실 14조의 경우에 조문의 용어가 계약 해제·해지로 되어있는데 이 용어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해지는 그때까지는 유효하고 이후부터는 소멸되는 건데, 즉 어떤 경우에는 소급적 소멸 즉, 계약의 해제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되고 이런 해제·해지의 사유와 그에 따른 각각의 효력을 여기 적어줘야 하는데, 보니까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1항의 2호부터 4호까지, 2항의 경우에는 물품의 하자에 따른 이해관계의 내용을 거기 기술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정확한 법률용어가 안 되어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약특수조건에 용어가 산만한 부분이 있는데 종전부터 시행되었던 건이고, 신규 계약체결 건이 아니긴 한데, 특수조건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결하기 때문에 다듬어줄 필요는 있습니다.</p>
<p>● ● ● 위 원</p>	<p>붙임2. 조치사항 세부내역을 보시면 ‘구두주의 또는 주의 사항 중 대체품 입고 지연으로 특채 처리시 사항 조치됨’이라고 되어있는데 ‘특채’가 어떤 의미인가요?</p>
<p>설 비 자 재 팀 장</p>	<p>물품이 입고되면 저희가 규격검사와 검수를 합니다. 저희는 당장 생산을 해야 하는데 원부자재 규격이 조금 틀렸다고 해서 빼버리면 당장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설비를 적용해봅니다. 적용해서 문제가 없으면 우선은 불합격 됐지만 사용하는 게 특채입니다.</p>
<p>◆ ◆ ◆ 위 원</p>	<p>제조업에서 품질검사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p>
<p>■ ■ ■ 위 원</p>	<p>지금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것으로 합시다.</p>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p>알겠습니다. 물품복수낙찰제와 같은 제도를 잘 연구해서 만든 구매팀에서 계약심의위원들께서 전부더 지적해온 부분이 빨리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몇 개가 지적이 됐는데, 지적된 사항이 새롭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인데도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을 담당자분들께서는 무겁게 좀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p> <p>지적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 12호 안건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2호 안건 「제주삼다수 PET CHIP 단가구매」 계약방법 심의의 건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p>
심의위원	네.
위원장	<p>제12호 안건은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p> <p>제 13호 안건 「제주삼다수 HDPE CHIP 단가 제조·구매」 계약방법 심의의 건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p>
심의위원	네.
■■■ 위원	일괄 상정했으니까 의결도 일괄로 하실까요?
위원장	<p>네. 의안번호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의안을 일괄 상정하였고, 일괄 심의했습니다. 계약원론에 관한 건 특별한 이견이 없으셨고요. 부대 조건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p>
심의위원	<p>네.</p> <p>5개 안건에 대해서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p>